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시 보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848호 2023. 2. 1.(수)

www.gongju.go.kr



공산성 만하루와 연지

선람	기관의장	회람						

공 주 시

발행 : 공주시 편집 : 홍보미디어실 ☎ 041-840-2544

우)352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공　고】

제2023-164호 공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안 행정예고 ····· 3

제2023-173호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24

제2023-186호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31

【고　시】

제2023-1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6

제2023-17호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40

제2023-18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42

제2023-19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5

제2023-20호 도로명주소 고시 ····· 48

공주시 공고 제2023-164호

「공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보다 명문화되고 체계적인 규정 제정을 통해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책무(안 제1조~제5조)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안 제6조~제10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안 제11조~제19조)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 따라 의무 교육시간 등 규정(안 제20조~제26조)

○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관리(안 제27조~제46조)

○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수립 (안 제47조~제49조)

3. 행정예고 기간 : 2023. 2. 1.(수) ~ 2023. 2. 21.(화) (21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문화재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시민안전과(중대재해예방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602
- 이메일 : chwosu@korea.kr
- 전 화 : 041-840-2393 / FAX : 041-840-3703

5. 그 밖에 사항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041-840-239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공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안)

□ 의 견

행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그 밖에 참고사항

-

공주시 훈령 제 호

공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공주시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규정을 확립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주시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근로자 중「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시설, 기계, 기구 및 작업방법 등 물적·인적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 따른 각종 수칙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7조에 따른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시장은 각 부서에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장 또는 팀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시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시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는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산업보건의)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위촉이나 선임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구성·위촉한다.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또는 팀장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필요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맡도록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활동보장) ①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3. 근로자측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7조의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안건 논의 등 위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비공개로 의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 등을 게시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5조(직무) 위원회는 시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서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정기・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2.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3. 간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안건상정 및 의결사항의 집행 점검 등 제반 업무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맡는다.

제16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회의) 위원장은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개최한다.

2. 중대재해 발생시

3. 위원장 및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청 시

제18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및 심의·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결과 공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교육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조언을 얻어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21조(정기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 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

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다.

제22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② 관리책임자는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다.

제23조(특별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별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다.

③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6조(기록·보존) ① 시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방법 및 내용

3. 교육실시자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관리

제27조(안전·보건관리계획)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경영방침을 실행할 수 있는 산업 재해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여부

4. 작업용구, 작업장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여부

5. 그 밖에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29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모든 근로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 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는 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법 제93조제1항 및 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근로자의 작업상태나 작업환경 등을 점검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별표 2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지휘하고 방호장치 점검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등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작업지휘자의 배치) ① 시장은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안전수칙 및 안전표지)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 및 안전표시를 작성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시행규칙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및 사용 장소는 시행규칙 별표 7과 같다.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시장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제37조(위험물질의 보관) ① 시장은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8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시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 전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작업환경측정) ① 시장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이하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서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규칙 별표 2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보호

구 착용상황과 점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그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는 취급하는 대상물질에 대한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되는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③ 시장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근골격계질환예방) 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직무스트레스)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안전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다.

제6장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수립

제47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안전관리자는 사고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고조사는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② 산업재해 발생원인 분석 및 검토는 재해발생과정 확인, 재해요인의 파악, 재해요인의 결정, 대책수립 순으로 실시한다.

③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한다.

제7장 보칙

제50조(무재해운동)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한다.

제51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서류는 법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 회의록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23 - 173호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조례제정을 통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23. 1. 1.)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공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규정
-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내용 각 호 규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안 5조)**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 **인구정책 사업 지원 등 (안 6조)**

-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사업 시행 가능
- 예산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설치 (안 제7조)**

- 위원회는 공주시 지속가능발전가능 위원회가 대행

○ **인구교육 홍보 (안 제8조)**

-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실시 및 홍보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인구정책 추진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가능

3. 입법 예고기간 : 2023. 1. 31. ~ 2023. 2. 21.(21일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미래전략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미래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 840-8047, FAX: 041-840-2308

5.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미래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 (☎ 041-840-8047)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2552)

└ FAX : 041-840-2308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나.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 정책

   다.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인구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전략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제시 및 추진과제 도출

2.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3. 그 밖의 투자계획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구감소대응위원회) ① 시장은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인구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공고 제 2023 - 186호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지역축제의 방문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축제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셔틀버스 운영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 **셔틀버스 운영 및 노선 규정(안 제3조·제4조)**

- 지역축제장 순환 셔틀버스 운행, 셔틀버스 위탁운영 및 운행 노선에 관한 사항 규정

○ **셔틀버스 운영 대상자 및 운영범위(안 제5조·제6조)**

- 셔틀버스 이용자와 운행일자 및 시간에 대한 사항

○ **셔틀버스 운행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셔틀버스 노선 등 운행에 대한 사전 홍보에 대한 규정

3. 입법 예고기간 : 2023. 2. 1. ~ 2023. 2. 22.(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관광과 축제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 041) 840-8069, FAX: 041-840-3719

5. 참고 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관광과 축제팀 (☏ 041-840-806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32552)

└ FAX : 041-840-3719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겨울공주군밤축제,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유구색동수국정원꽃축제, 백제문화제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의 장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제5조(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제2조제3호의 이용자로 제한한다.

제6조(운영범위)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일자 및 시간은 축제의 성격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홍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 운행 노선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고시 제2023 - 1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봉황동 376-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02. 01.

공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1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붙임 2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공문화 · 체육시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없음	20	공주교육대학교	대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6-1번지 일원	73,236.9	-	73,236.9	1985.04.03.	

2 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 조서(변경)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73,236.9**	**-**	**73,236.9**		
공주교육대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6-1번지 일원	소계	73,236.9	-	73,236.9	100.0	
		건축부지	15,063.9	**증)140.1**	15,204	20.8	
		도로 및 주차장	20,986.3	**증)45.5**	21,031.8	28.7	
		운동장	12,271.8	-	12,271.8	16.7	
		조경시설 및 녹지	24,914.9	**감)185.6**	24,729.3	33.8	

2. 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세부시설명	위치	토지이용계획(㎡)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6-1번지 일원	**73,236.9**	-	**73,236.9**	**100.0**	
건축부지	입지관, 청목관 등		15,063.9	**증)140.1**	15,204	20.8	
도로 및 주차장	도로/주차장 등		20,986.3	**증)45.5**	21,031.8	28.7	
운동장	운동장, 테니스장 등		12,271.8	-	12,271.8	16.7	
조경시설 및 녹지	녹지 등		24,914.9	**감)185.6**	24,729.3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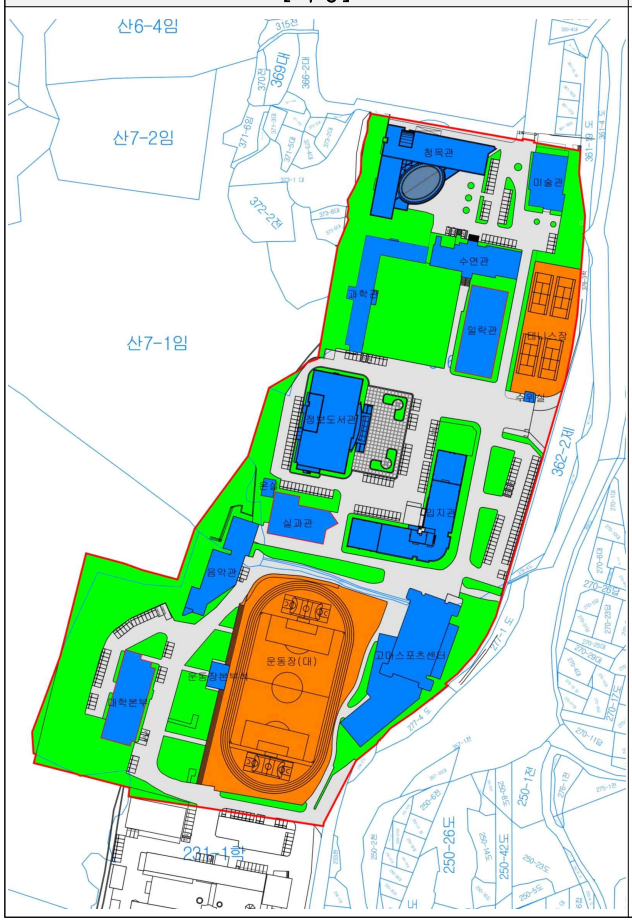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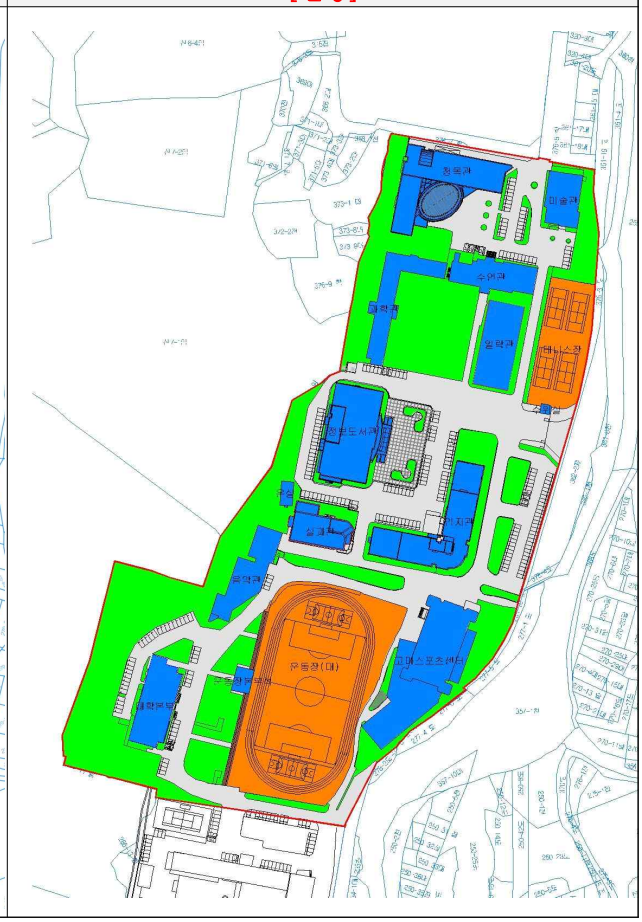
3. 건축부지 내 건축물 조서(변경)

구분		시 설 명	용 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지하/지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합 계				15,063.78	증)140.1	15,203.88	53,802.53	증)239.97	54,042.50	최고 층수 6층	최고 층수 6층	
공주교육대학교	교육기본시설	소 계		12,011.99	증)140.1	12,152.09	47,892.30	증)239.97	48,132.27			
		입지관	강의실	1,796.45	-	1,796.45	11,148.24	-	11,148.24	1/6	1/6	
		청목관	강의실	2,277.79	-	2,277.79	9,984.91	-	9,984.91	1/6	1/6	
		정보도서관	도서관	1,885.58	-	1,885.58	5,646.01	-	5,646.01	1/3	1/3	
		과학관	강의실	966.5	-	966.5	3,265.50	-	3,265.50	1/3	1/3	
		음악관	강의실	887.2	-	887.2	2,667.06	-	2,667.06	1/4	1/4	
		대학본부	**대학본부**	**962.00**	**증)94.55**	**1,056.55**	**2,932.00**	**증)3.66**	**3,085.47**	**1/3**	**1/3**	
		미술관	강의실	618.06	-	618.06	1,828.26	-	1,828.26	0/3	0/3	
		실과관	**강의실**	**679.00**	**증)45.55**	**724.55**	**1,863.00**	**증)236.31**	**2,099.31**	**1/4**	**1/4**	
		일락관	강의실	1,153.62	-	1,153.62	5,507.24		5,507.24	0/2	0/6	
		수연관	학생회관	785.79	-	785.79	3,050.08	-	3,050.08	1/4	1/4	
	지원시설	소 계		2,925.51	-	2,925.51	5,761.35	-	5,761.35			
		고마스포츠센터	강당	2,783.01	-	2,783.01	5,528.85	-	5,528.85	0/3	0/3	
		운동장본부석	-	142.5	-	142.5	232.5	-	232.5	0/2	0/2	
	부속시설	소 계		126.28	-	126.28	148.88	-	148.88			
		온실	온실	103.68	-	103.68	103.68	-	103.68	0/1	0/1	
		수위실	수위실	22.6	-	22.6	45.2	-	45.2	1/1	1/1	

4.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주교육대학교	1. 토지이용계획 가. 건축부지: 증) 140.1㎡ 나. 도로 및 주차장: 증)45.5㎡ 다. 조경시설 및 녹지: 감)185.6	◦ 실과관 및 대학본부 증축에 따른 면적 증감
	2. 건축계획 가. 대학본부 - 건 축 면 적 : 증)94.55㎡ - 건축연면적 : 증)3.66㎡ 나. 실과관 - 건 축 면 적 : 증)45.55㎡ - 건축연면적 : 증)236.31㎡	◦ 실과관 및 대학본부 증축에 따른 면적 증가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기정]	[변경]
	

공주시 고시 제2023 - 17호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추진 중인 사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 및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사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일원
   나.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사곡문화복지센터, 스마트 절골지킴이
   - 지역경관개선 : 절골탐방길, 절골알림이
   - 지역역량강화 : 시설연계프로그램, 교육·훈련, 운영지원

4. 사업비 소요액 : 5,460백만원 (국비 3,822 / 도비 218 / 시비 1,420)

5. 사업기간 : 당초 : 2021. 7. ~ 2022. 12.
변경 : 2021. 7. ~ 2023. 12.

6. 사업의 효과 : 사곡면의 문화복지 인프라 보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디딤돌 구축

7. 사 업 시 행 자 : 공주시장(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일괄 위•수탁)

8. 기 타 사 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지역활력과 ☎ 041-840-8248)

공주시 고시 제2023 - 18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55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02. 01.

공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55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나. 명칭 :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9,349㎡

나. 건축면적 : 1,431.26㎡, 연면적 : 1,660.2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삼정가스화학㈜

나. 주소 : 공주시 우성면 차동로 97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1.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551-7	주	9184	9184	삼정가스화학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차동로 97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
2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554-2	임	165	165	삼정가스화학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차동로 97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
합 계 (2필지)				9,349	9,349					

2. 건축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건물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고
			종류	연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551-7	위험물저장처리시설	615.16㎡	삼정가스화학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차동로 97	(주)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근저당
			위험물저장처리시설	185.68㎡					
			사무동	486.00㎡					
			제1종근린생활시설	193.96㎡					
			제1종근린생활시설	179.40㎡					
합 계 (5동)				1,660.20㎡					

공주시 고시 제2023 - 19호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주시 소학동 59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041-840-854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02. 01.

공 주 시 장

1.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붙임1 참조

2.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1/1,000) : 붙임2 참조

3.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1/1,000) : 붙임2 참조

[붙임1] 공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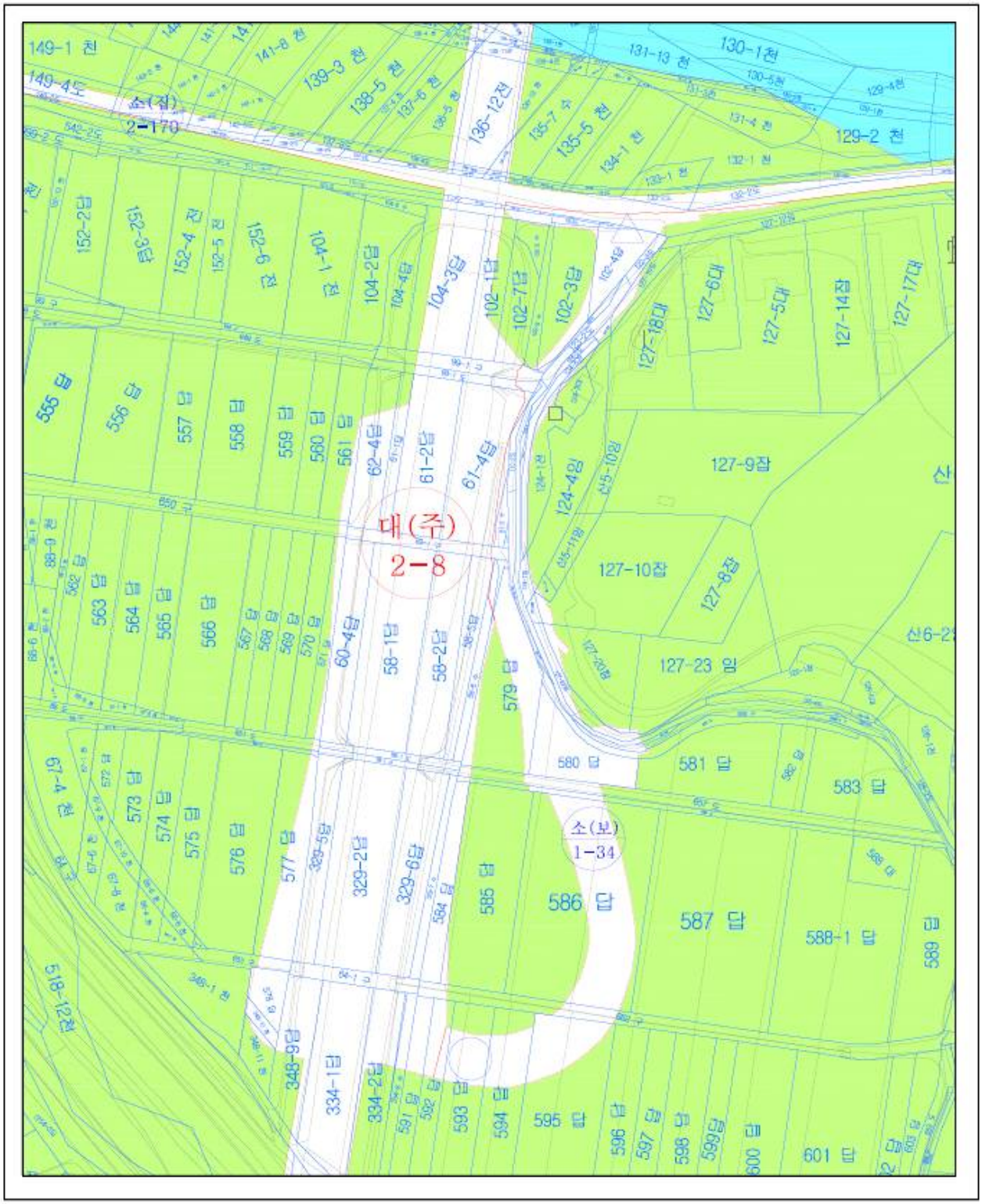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8	30	주간선	2,897	소학동 구역계	신기동 지구계	일반 도로	논산행 국도23호선	'97.04.19	
변경	대로	2	8	30~97	주간선	2,897	소학동 구역계	신기동 지구계	일반 도로	논산행 국도23호선	'97.04.19	
신설	소로	1	34	10~60	보조 간선	494	대로 2-8호	소로 2-170	일반 도로	-	-	

주1) 대로2-8호선 폭원은 접속연결로 및 법면포함 폭원 임.
주2) 소로1-A호선 폭원은 법면포함 폭원 임.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대로2-8	■ 도로 폭원 변경 - 기정 = 30m - 변경 = 30~97m(증 0~67m)	■ 국도23호선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해 신공주대교 접속연결로를 개설하여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도록폭원 변경
-	소로1-34	■ 도로 신설 - 폭원 = 10~60m - 연장 = 494m	■ 국도23호선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기 위해 연결도로 신설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공주시 고시 제2023 - 2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변경 및 폐지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1.

공 주 시 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은정암길 15 외 18건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15건)				
변경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1건)				
폐지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2.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 주소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241-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은정암길 15	20230201	신규	2010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653	충청남도 공주시 중미산길 46 (웅진동)	20230201	신규	20191115	새로 나는 도로의 뒤쪽에 위치한 산을 중미산으로 부른다고 하여 그 명칭을 활용	
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772-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범박골길 23-16	20230201	신규	20100112	마을 형상이 산을 배경으로 복호상이고 호랑이는 밥이있어여 한다하여 범박골길로 부여	
4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546-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231-100	20230201	신규	2009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반영	
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215-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길 164-44	20230201	신규	20100112	도로가 계실리를 향하여 뻗어있고 도로의 방향성을 고려, 계실길이라 부여	
6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 398-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은골2길 54-27	20230201	신규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7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23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산제당길 36-42	20230201	신규	20100112	산신제를 지내는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쌍대리 31-1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토끼울길 139-58	20230201	신규	20100112	옛날에 산토끼가 많이 살았으며 옥토망월형의 명당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토끼울길이라 부여	
9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153-11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백제큰길 55	20230201	신규	20090825	기존 도로명칭 활용	
10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정치리 143-1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감나무길 26-32	20230201	신규	20100112	감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곳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 주소전환 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565-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동1길 21-14	20230201	신규	20100112	가을때문에 부촌이 된 마을이고 풍류도 있고 해서 추동이라 불렀다 하며, 일련번호 부여방식과 혼합 활용 추동1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 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04-1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9-15 (봉황동)	20230201	신규	20100202	행정구역 명칭 반영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325-9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정광터1길 82-13	20230201	신규	20100112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 하여 정가터라 불린 후 어원이 변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산성리 55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하누아비길 275-4	20230201	신규	20100112	지역특성 반영	
15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27-11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초정골길 46	20230201	신규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적장부주소전환계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170-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170-1, 170-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장다리골길 2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장다리골길 22	2023. 01.16	소유자 신청에 의한 관련지번 추가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71-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로 19	2023.01.17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한 폐지
2	충청남도 공주시 교동 66-1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41	2023.01.17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한 폐지
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565-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추동1길 21-4	2023.01.18	건물말소에 의한 폐지